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8, No. 106, pp.361-391
<https://doi.org/10.29212/mh.2018..106.10>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고려의 보주(保州) 확보와 그 의미

김선아*

1. 머리말
2. 요의 각장 설치 요구와 고려의 대응
3. 금의 보주 양여(讓與)와 고려의 보주 통치
4. 맺음말

1. 머리말

고려의 영토와 국경선 확정 문제는 중국과 요동세력의 동향을 비롯한 고려와 그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그러므로 고려의 고유 영역이라도 중국 측이 침략하는 경우 고려가 영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제약을 받게 되고, 해당 지역은 분쟁 지역이 되었다. 고려와 국경을 마주한 중국 측 세력은 993년 이후 요(遼)와 금(金)이었다. 1014년에 요는 압록강(鴨綠江) 하류 남쪽 지역, 즉 현재의 의주(義州)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원

지역을 점령하여 보주(保州)라고 이름 지었다. 고려가 보주를 수복하여 영유권을 인정받기까지는 1세기 이상이 걸렸다. 요·금 교체시기에 고려는 보주를 수복했다.

보주는 압록강 하류에 위치하여 한반도와 요동 일대는 물론 여진지역과 중국 본토로의 교통로로 이용될 수 있는 요충지였다. 보주는 1014년 이래 요의 영역으로 편입되었다가 1110~1120년대에 고려의 영토로 확보되었다. 현대와 같이 선으로 구분되는 영토의 범위가 명확히 확정되지 않았던 상황 가운데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영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었다.¹⁾

11세기 보주를 둘러싸고 고려와 요의 영토분쟁에 대해서는 보주에 거란이 교역 시설인 각장(樵場)을 설치하려 한 점이 검토된 바 있다.²⁾ 고려와 거란 간 외교 관계의 기본이 되었던 994년(성종 13)의 조약과 양국 간의 영역 분쟁에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에서도 보주를 다루었다.³⁾ 고려가 보주를 점령당한 불리한 정세를 외교적·군사적으로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994년(성종 13)의 조약이 활용되었음을 밝힌 연구도 나왔다.⁴⁾

요·금 교체 시기 고려의 보주 확보에 대해서는 고려의 북진정책이 압록강 선에서 멈추는 과정을 살펴보는 차원에서,⁵⁾ 또는 고려와 거란 간의 압록강 지역 영토 분쟁을 고찰하는 연구에서 언급되었다.⁶⁾ 인종대의 보주 확보에 대해서는 고려의 대금외교정책이라는 면에서,⁷⁾

1) 김순자, 「12세기 고려와 여진·금(金)의 영토분쟁과 대응」, 『역사와 현실』 83, 2012, 139~140쪽.

2) 이미지, 「高麗 宣宗代 樵場 문제와 對遼 관계」, 『한국사학보』 14, 2003.

3) 김순자, 「10~11세기 高麗와 遼의 영토 정책-압록강선 확보를 중심으로-」, 『북방사논총』 11, 2006.

4) 金佑澤, 「11세기 對契丹 영역 분쟁과 高麗의 대응책」, 『한국사론』 55, 2009.

5) 方東仁, 「高麗時代 北進政策의 推移」, 『領土問題 研究』 2, 1985.

6) 許仁旭, 「高麗·契丹의 압록강 지역 영토분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7) 박한남, 『高麗의 對金外交政策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3; 「고

여진·금(金)의 영토 분쟁과 양국의 대응을 살펴보는 입장에서 연구되었다. 또한 서표 문제에 주목하여 보주 문제를 다룬 연구도 있다.⁸⁾ 최근에는 고려가 외교력을 통해 보주를 수복하여 그 영유권을 승인 받은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나왔다.⁹⁾

기존 연구를 통해 고려가 외교적 노력의 결과로 보주를 확보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국교 수립 초기 보주 영유권에 치중한 결과 고려의 보주 확보를 자주적이고 실리적인 외교였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이후 보주라는 거점이 실제로 어떻게 통치되었는지 살펴보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본고에서는 보주 지역을 둘러싸고 고려·요·금 등 각 왕조의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요가 보주 지역에 각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과 고려가 이를 저지하려는 의도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보주라는 지역을 통해 양국의 이해관계가 달랐던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3장에서는 요·금 교체시기 고려가 보주를 확보한 이후 보주 지역을 어떻게 통치했는지 알아보겠다. 이를 통해 보주 지역이 서북면 방면 통치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요의 각장 설치 요구와 고려의 대응

보주를 확보하는 문제는 11세기부터 고려와 거란 사이의 주요 현안이었다. 보주에 대해서 『고려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¹⁰⁾

려 인종대 對金政策의 성격-保州讓與와 投入戶口推刷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 3, 1996.

8) 김성규, 「여·금의 국교 수립과 ‘誓表’ 문제», 『한국사연구』 173, 2017.

9) 박윤미, 「고려의 保州 수복과 고려·금 간 외교교섭», 『한국중세사연구』 51, 2017.

A-1. 의주(義州)는 본래 고려의 용만현(龍灣縣)으로, 또 화의(和義)라고도 부른다. 처음에 거란(契丹)이 압록강의 동쪽 언덕에 성(城)을 쌓고 보주(保州)라고 불렀는데, 문종대에 거란이 또 궁구문(弓口門)을 두면서 포주(抱州)라고 불렀다【파주(把州)라고도 한다.】. 예종 12년(1117)에 요(遼)나라 자사(刺史) 상효손(常孝孫)이 도통(都統) 아율녕(耶律寧) 등과 함께 금(金) 병사를 피해 바닷길로 들어오면서 우리의 영덕성(寧德城)에 문서를 보내어 내원성(來遠城)과 포주(抱州)를 우리에게 귀속시키니 우리 병사가 그 성(城)에 들어가서 병장기·재물과 곡물을 수습하였다. 왕이 기뻐하며 의주방어사(義州防禦使)로 고치고 남쪽 지방의 인호(人戶)를 데려다가 그곳을 채웠다. 이때에 다시 압록강을 경계로 관방(關防)을 설치하였다. 인종 4년(1126)에 금(金)도 역시 의주를 우리에게 귀속시켰다. 고종 8년(1221)에 반역(叛逆)이 일어났다 하여 함신(咸新)으로 강등시켰다가 얼마 후에 예전대로 복구하였다. 공민왕 15년(1366)에 목(牧)으로 승격시켰다. <공민왕>18년(1368)에 만호부(萬戶府)를 두었다. 별호(別號)는 용만(龍灣)이다. 압록강(鴨綠江)이 있다【마지수(馬訾水) 혹은 청하(靑河)라고도 한다.】(『고려사』 권58, 지12, 지리2, 北界義州牧).¹¹⁾

A-2. 흥화도(興化道)는 29역(驛)을 관장한다. 장녕(長寧)【황주(黃州)】, 안신(安信)【가주(嘉州)】, 신안(新安)·운흥(雲興)【곽주(郭州)】, 임반(林岾)·통양(通陽)【선주(宣州)】, 풍양(豐陽)【철주(鐵州)】, 광지(光池)【영주(寧州)】, 창태(昌泰)【영덕(寧德)】, 압록(鴨綠)【정주(靜州)】, 회원(會元)【의주(義州)】, 명구(名駒)【용주(龍州)】, 영기(靈騎)【인주(麟州)】, 종화(從化)【위원(威遠)】.

10) 보주의 위치에 대해서는 의주 내의 九龍淵 古城地로 추정하는 연구가 있다(尹武炳, 「高麗北界地理考」(下), 『역사학보』 5, 1953). 일반적으로 보주의 위치는 『고려사』 지리지의 기록에 따라 오늘날의 평안북도 의주시로 보고 있다. 최근에는 보주와 압록강 부근인 의주를 달리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나왔다(윤한택, 「고려 보주의 위치에 대하여」, 한국중세사학회 제112회 정기발표회 자료집, 2016.12). 이에 대해서는 지리비정에서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기에 좀 더 면밀한 사료 검증이 요구된다.

11) 義州本高麗龍灣縣, 又名和義. 初契丹置城于鴨綠江東岸, 稱保州, 文宗朝, 契丹又設弓口門, 稱抱州【一云把州】. 睿宗十二年, 遼刺史常孝孫, 與都統耶律寧等, 避金兵, 泛海而遁, 移文于我寧德城, 以來遠城及抱州, 歸我, 我兵入其城, 收拾兵仗·錢穀. 王悅, 改爲義州防禦使, 推刷南界人戶, 以實之. 於是, 復以鴨綠江爲界, 置關防. 仁宗四年, 金亦以州歸之. 高宗八年, 以叛逆, 降稱咸新, 尋復古. 恭愍王十五年, 陞爲牧. 十八年, 置萬戶府. 別號龍灣. 有鴨綠江【一云馬訾水, 一云靑河】.

장흥(長興【태주(泰州)】, 성양(城陽)·삼기(三岐)·통의(通義)·대평(大平)【구주(龜州)】, 보봉(寶峯)·회인(懷仁)【안의(安義)】, 화전(花田)·임천(臨川)【안용(定戎)】, 은암(銀岳)·진전(榛田)【영삭(寧朔)】, 암사(岳舍)【구주(龜州)】, 방전(芳田)·창평(昌平)【삭주(朔州)】, 안부신역(安富新驛)【안용(安戎)】이다(『高麗史』 卷82, 志36, 兵二, 참역 흥화도 소속 29개 역).¹²⁾

A-1과 A-2는 『고려사』에서 보주의 연혁과 관할 구역을 알 수 있는 기록이다. 이에 따르면 보주라는 명칭은 요가 1014~1015년 무렵에 이 지역을 점령한 뒤 붙인 것인데, ‘포주(抱州)’로 지칭되기도 했다. 이곳의 가장 큰 지리적 특징은 압록강 도강(渡江)을 위한 동쪽 거점이라는 것이다. 동쪽으로부터 흘러들어온 압록강은 이 지역에서 여러 갈래로 나뉜다.¹³⁾

A-1과 A-2에서 알 수 있듯이 고려에서 보주는 흥화도(興化道) 용만현(龍灣縣)에 속했다. 보주는 북계, 즉 서북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주진군이 파견되었다.¹⁴⁾ 양계에 파견된 주진군은 주현군과 마찬가지로 중앙의 직접적인 지휘계통 하에 들어가 있었고, 그 인원이 중앙정부에 의해서 파악되고 있었다.¹⁵⁾ 보주에는 중낭장(中郎將) 3인, 낭장(郎將) 6인, 별장(別將) 12인, 교위(校尉) 24인, 대정(隊正) 48인, 행군(行軍) 1,249인의 주진군이 파견될 정도로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다.¹⁶⁾

많은 수의 주진군이 파견되었던 보주는 고려 시대에 중국과 지속적

12) 興化道掌二十九. 長寧【黃州】, 安信【嘉州】, 新安·雲興【郭州】, 林畔·通陽【宣州】, 豐陽【鐵州】, 光池【寧州】, 昌泰【寧德】, 鴨綠【靜州】, 會元【義州】, 名駒【龍州】, 靈驥【麟州】, 從化【威遠】, 長興【泰州】, 城陽·三岐·通義·大平【龜州】, 寶峯·懷仁【安義】, 花田·臨川【定戎】, 銀岳·榛田【寧朔】, 岳舍【龜州】, 芳田·昌平【朔州】, 安富新驛【安戎】.

13) 『신증동국여지승람』 권53, 평안도 의주목.

14) 고려 주진군에 대해서는 이기백, 『高麗 兩界의 州鎮軍, 高麗兵制史研究』, 일조각, 2002 참조.

15) 이기백은 양계에 있어서는 거의 屬縣을 거느리는 경우가 없었으므로, 대부분의 경우 우에 이들은 城을 중심으로 한 독립된 전투단위부대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보았다(이기백, 위의 책, 2002, 245쪽).

16) 『고려사』 志 卷37, 兵3, 州縣軍.

으로 분쟁할 만큼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993년 요의 침략을 계기로 고려와 요는 압록강을 경계로 하여 그 이남 지역은 고려의 영토로, 그 이북 지역은 요의 영토로 하는 협정을 맺었다.¹⁷⁾ 그러나 20년 후인 1014년에 요가 압록강 하류 남쪽을 일방적으로 점령하여 보주를 설치함으로써 이 지역은 요의 대고려 침입의 군사기지로 중시되어 왔다. 요 시기에 보주는 지도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지도 1〉 요 시기 거란 지도(『中國歷史地圖集』 6)



지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주는 요에서 보주는 동경도(東京道)에 속했고, 보주 하에는 내원현(來遠縣)이 있었다.¹⁸⁾ 보주는 고려와 요의 국경의 최전방에 위치했다. 요가 보주에 각장을 설치하려는 시도와

17) 최근에는 전쟁 이후 거란과 고려의 강계의 획정에 관하여는 압록강이 두 나라의 경계선이 아니라 요동과 압록강을 양국의 경계지대로 볼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져 주목된다(허인옥, 「고려 성종대 거란의 1차 침입과 경계 설정」, 『전북사학』 33, 2008).

18) 『요사』 권38, 지8, 지리2, 동경도.

이에 대한 고려의 대응 과정은 다음의 사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B-1. (統和) 23년에 振武軍과 保州에 모두 榷場을 설치했다(『요사』 권60, 지29, 식화지 下).¹⁹⁾

B-2. 보주(保州) 선의군(宣義軍), 절도사(節度使)를 두었다. 고려가 주(州)를 설치하였다. 옛 현(縣)이 1곳 있었는데 내원현(來遠縣)이라고 하였다. 성종(聖宗)이 고려왕 왕순(王詢, 현종)이 멋대로 왕위에 즉위하였다 하여 죄를 물었으나 굴복하지 않다가 통화(統和) 연간 말에 고려가 항복하였다. 개태(開泰) 3년(1014)에 그 보주, 정주(定州)를 취하여 이곳에 각장(榷場)을 설치하였다. 동경통군사(東京統軍司)에 예속되었다(『요사』 권38, 지리지 2, 동경도 보주 선의군).²⁰⁾

B-3. 2월 갑오 요(遼)에서 압록강(鴨江) 기슭에 각장(榷場)을 설치할 것을 의논하자,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 이안(李顔)을 장경소향사(藏經燒香使)로 의탁하여 귀주(龜州)로 가서 비밀리에 변방의 일을 의논하게 하였다(『고려사』 권10, 선종 5년 2월).²¹⁾

B-4. 太僕少卿 金先錫을 요나라에 보내 榷場의 설치를 중지해 줄 것을 간청했는데 그 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략) ① 承天皇帝太后께서 조정에서 섭정하실 때 봉토를 획정해 내려주시니 (중략) 천황학주(天皇鶴主)의 성(城)으로부터 서쪽의 언덕까지 거두고 일자별교(日子鰲橋)의 물(水)로 한정하여 동쪽을 우리의 강토로 할애하였습니다. (중략) 당시에 배신(陪臣) 서희(徐熙)가 경계(境界)를 맡아 관할하고 있었고, 동경유수 소손녕이 황제의 명령을 받들어 상의하여 각자가 양쪽 국경을 담당하여 여러 성을 나누어 쌓도록 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공진(河拱辰)을 안문(鴈門)에 파견하여 압록(鴨綠)에서 구당사(勾當使)가 되도록 하고, 낮에는 나가서 동쪽 강변을 감시하고 밤에는 내성(內城)으로 들어와 머물게 하였습니다. (중략) ② ①상국에서는 갑인년(1014) 들어 갑자기 교량을 설치하고 배를 만들어 길을 터놓았습니다.

19) (聖宗統和) 二十三年, 振武軍及保州並置榷場.

20) 保州, 宣義軍. 節度. 高麗置州, 故縣一, 日來遠. 聖宗以高麗王詢擅立, 問罪不服, 統和末, 高麗降, 開泰三年取其保·定二州, 於此置榷場. 隸東京統軍司.

21) 二月 甲午 以遼議置榷場於鴨江岸, 遣中樞院副使李顔, 托爲藏經燒香使, 往龜州, 密備邊事.

㉑또 을묘년(1015)에는 상국의 州城에서 국경을 넘어 들어와 군사를 배치했으며, ㉒을미년(1055)에는 弓口를 설치하고 驛亭을 만들었습니다. ㉓병신년(1056) 들어 황제께서는 우리의 건의를 받아들여 시설물들을 철거하게 하고, ‘기타 잡다한 사안들의 경우에도 항상 규정을 지키도록 지시했다.’는 조칙을 보내셨습니다. ㉔또 임인년(1062)에 상국에서 義宣軍 남쪽에 買賣院을 개설하려 했을 때 우리가 항의하자 시설의 보수를 중단했습니다. ㉕갑인년(1074)에는 정용성(定戎城 : 지금의 평안북도 의주군) 북쪽에 새로 정찰용 막사를 설치하고는 우리가 항의하자 이미 오래전에 설치한 것이라고 회답해 왔습니다. 본국은 대대로 상국에 충성을 다했으며 해마다 조공을 바쳐왔습니다. ㉖그런데도 사신을 여러 차례 보내 건의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군사용 막사와 성책과 교량을 철거하지 않고 있으며 하물며 지금 와서 新市까지 만들려고 하니, 이는 선대 황제들의 遺旨와 어긋나는 일이며 저희들의 간곡한 정성을 측은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중략) 앞드려 바라옵건대 황제폐하께서는 변방을 맡은 신하들의 그릇된 주장을 물리치시고 변방의 재후가 크게 근심하고 있음을 생각하시어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들판에서 마음 놓고 농사를 지어 다시 생업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고 교역하는 榷場 시설을 금지시켜 새로 만들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고려사』 권10, 선종 5년 9월. 22)

22) 九月 遣太僕少卿金先錫如遼, 乞罷榷場. 表曰, (중략) “臣伏審承天皇太后, 臨朝稱制, 賜履劃封, (중략) 自天皇鶴柱之城, 西收彼岸, 限日子鼈橋之水, 東割我疆. 統和十二甲午年, 入朝正位高良, 賈到天輔皇帝詔書, ‘勅高麗國王王治. 省東京留守遜寧奏, 卿欲取九月初, 發丁夫修築城砦, 至十月上旬已畢. 卿才惟天縱, 智達時機, 樂輸事大之誠, 遠奉來庭之禮. 適因農隙, 遠集丁夫, 用防曠野之寇攘, 先築要津之城壘, 雅符朝旨, 深叶時情. 況彼女眞, 早歸皇化, 服我威信, 不敢非違. 但速務於完修, 固永期於通泰.’ 其於眷注, 豈捨寐興? 于時, 陪臣徐熙, 掌界而管臨, 留守遜寧, 奉宣而商議, 各當兩境, 分築諸城. 是故, 遣河拱辰於鴈門, 爲勾當使於鴨綠, 晝則出監於東矣, 夜則入宿於內城. 遂仗天威, 漸祛草竊, 後來無備, 邊候益閑. 聖宗之勅墨未乾, 太后之慈言如昨, 甲寅年, 河梁造舟而通路. 乙卯歲, 州城入境以置軍, 乙未, 設弓口而創亭. 丙申, 允需頭而毀舍, 詔曰, ‘自餘瑣事, 俾守恒規’. 又壬寅年, 欲設買賣院於義宣軍南, 論申則葺修設罷. 甲寅歲, 始排探守庵於定戎城北. 回報曰, 起蓋年深. 當國代代忠勤, 年年貢覲. 幾遣乎軺車章奏, 未鑄乎庵守城橋, 矧及茲辰, 欲營新市, 似負先朝之遺旨, 弗矜小國之竭誠 (중략) 伏望皇帝陛下, 排闥臣之橫議, 念邊府之殷憂, 任耕鑿於田原, 復安舊業, 禁榷酤之場屋, 無使新成.

B-1은 1005년, 요가 보주에 각장을 개설했다는 기록이다. 각장이란 국경 지역에 일정한 장소를 정하여 교역을 하는 것을 뜻한다.²³⁾ 보주는 여진과도 국경을 접하는 지역이므로 요가 중개무역을 하기에 적합한 곳이었다. 이 기록은 보주 지역이 요와 고려를 연결하는 중개 지역으로 이용되고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다만 1010년 요의 2차 침입으로 인해 각장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그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현종 5년(1014)에도 양국 간에 각장이 개설되었다. 이는 B-2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이 각장도 요와의 전쟁을 겪으면서 폐쇄되었을 것이다. 이후 한동안은 각장이 개설되지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요는 계속해서 고려와의 교역을 시도했다. 요의 이러한 시도는 B-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압록강변에 각장을 설치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사료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고려에서는 요의 각장 설치를 반대했다. 고려에서는 선종 4년(1087) 정월에 고주사(告奏使) 박창개(朴昌槩)를 보냈고, 김한충(金漢忠)을 밀진사(密進使)로 파견한 바 있었다.²⁴⁾ 고려는 요가 각장을 설치할 경우 국경 분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여러 차례 회유를 위한 사신을 파견했다.

나아가 B-4에서는 고려가 각장 개설의 무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한 사실이 드러난다. 표문을 통해 요가 각장을 개설하고자 한 의도와 고려가 이를 저지한 이유를 살펴보자. 이 표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고려 성종 대 있었던 지계 획정 사실을 언급

23) 각장 무역은 중세 동아시아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사무역으로, 본격적 시행은 지역에 따라 대외무역의 형태를 달리한 송 왕조에서였다. 각장에서의 교역 형태는 사무역이라 하더라도 국가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하여 일정한 규제를 가하고 있었다. 무역을 거래할 때 무역 당사자 간에 직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를 담당하는 牙人을 두어 매매당사자로부터 중개료인 牙錢을 징수하도록 했다. 각장 무역은 사행 무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접경 지역에서 교역하기 때문에 육상 무역의 원거리 소요로 인한 불리함이 해소 될 수 있는 이점이 있다(이정희, 「고려전기 對遼貿易」, 『지역과 역사』 4, 1997, 24~25쪽).

24) 『고려사』 권10, 선종 4년 정월조 및 10월.

했고(B-4-①) 현종 대 이후 요가 고려 영토를 침입한 사실을 지적했으며(B-4-②-①~⑥), 이러한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각장 문제를 언급했다(B-4-③). 표문에 언급된 내용은 고려 조정에서 각장 설치 문제와 관련해 중요하게 인식했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지계 획정 문제를 살펴보자. 위의 표문은 고려와 거란 사이에 합의한 내용을 들어 항의를 하고 있는데, 그 영토의 한계가 언급되고 있다. 이 가운데 “自天皇鶴柱之城, 西收彼岸, 限日子鼈橋之水, 東割我疆”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해석하면, 천황학주지성의 서쪽을 彼岸으로 거둬들이고, 日子鼈橋之水 동쪽을 我疆으로 주었다는 것이다. ‘일자별교지수’의 동쪽을 고려의 영토라고 한 것으로 보아, ‘천황학주지성’의 서쪽을 彼岸으로 거둬들이는 표현에서 彼岸은 거란의 영토를 말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양국의 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²⁵⁾

영역에 대한 표현에 있어 압록강이 기준이 아닌 ‘천황학주지성’과 ‘일자별교지수’가 기준으로 되어 있어 주목된다. 이 표문은 고려가 요의 각장 및 각종 시설물 설치 등 압록강 동안 침범 사실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거란이 승복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이 표문의 글은 승천황태후가 고려 영토로 인정해 준 내용을 전제했을 가능성이 높다.²⁶⁾

25) 허인옥, 앞의 논문, 2012 44~48쪽 참조.

26) 승천황태후가 내린 인의 내용을 거란과 영토문제를 논할 때마다 고려가 이용했음은 김순자, 「10~11세기 高麗와 遼의 영토정책」, 『북방사논총』 11, 2006, 266쪽 및 이미지, 「고려 성종대 地界劃定の 성립과 그 외교적 의미」, 『한국중세사연구』 24, 2008 참조. 허인옥은 ‘천황학주지성’ 즉 요동지역의 서쪽을 거란의 강역으로 삼았고 압록강으로 합류하는 ‘일자별교지수’(=임호수, 압록강 동북쪽 지류)를 기준으로 동쪽을 고려의 강토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압록강 하류로 고려의 서북면 경계가 한정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즉 양국 간에 획정된 영역의 기준은 ‘천황학주지성’으로 표현된 요동 지역과 ‘일자별교지수’로 표현된 압록강의 한 지류의 완충지대인 것이다(허인옥, 위의 논문, 2012, 50쪽).

그렇다면 고려가 이처럼 지계 획정 사실을 언급한 데에는 어떤 연유가 있었을까. 선대의 일을 상기시킴으로써 요는 지계획정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이로 인해 보주에 각장을 설치하는 등 압록강을 침범한 모든 일들은 선대의 일을 반복한 것이 된다. 즉 고려 영토를 침범한 사실들이 모두 거란의 잘못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²⁷⁾

두 번째로 갑인년(B-4-②)은 고려 현종 5년(1014)으로, 이 때 요가 압록강에 배를 띄워 통로로 삼았다고 했다. 당시 양국은 세 번째 전쟁을 겪고 있었다. 현종 5년 9월 요가 공식적으로 강동 6주 반환을 요구함으로써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갑인년의 일은 이 때의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는 요가 국경 지역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이다. 을묘년(B-4-③)은 현종 6년(1015)으로, 이 해에는 州城의 경내에 들어와 置軍 했다고 했다. 압록강 동쪽에 거점을 확보한 요는 흥화진을 포위하고 강동 6주를 되찾기 위해 진격했다. 고려는 이에 맞서 요의 사신을 구류하는 등 강경책을 썼으며, 결국 요를 퇴각시켰다. 이 전쟁에서 요는 거점을 확보했는데, 고려는 이를 ‘성을 쌓았다’라고 표현했다.

을미년은 문종 9년(1055)이다. 일 년 전 요는 포주성 동쪽 끝에 궁구문란(弓口門欄)을 설치했다. 이 때 고려에서는 요의 움직임에 지켜보려 했던 것 같다. 그러나 문종 9년 요가 우정(郵亭)을 설치하자 고려는 이를 문제 삼았다. 문종 10년(B-4-②-㉔)에도 고려가 사신을 파견하자 요는 조서를 내려 고려의 항의를 무마했다. 하지만 다음해 4월, 문종이 요의 약속 불이행을 언급하며 다시 사신을 파견하려 했음을 볼 때, 요는 별다른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것 같다.

요는 다시 고려의 영역을 침범했는데, 이는 B-4-2-㉔에서 드러난다. 문종 16년(1062) 요는 매매원(賣買院)을 설치하려 했다. 갑인년(B-4-2-f)은 문종 28년(1074)인데, 탐수암을 정용성 북쪽에 설치했다.

27) 이미지, 「高麗 宣宗代 樞場 문제와 對遼 관계」, 『한국사학보』 14, 2003, 86쪽.

이와 관련하여 문종 29년(1075)에는 요 동경으로부터 압록강 이동의 강역을 다시 확정하자는 요청이 있었다.²⁸⁾

B군에 언급된 사건들은 단순한 영역 침범이나 월경 행위가 아니라, 요가 특정한 시설물을 설치하려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여기에서 국경 지역에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그 지역이 자신의 영역임을 공식화하는 행위이다.²⁹⁾ 고려가 성종대 지계 획정을 영토 문제의 기준으로 보는 것과는 달리,³⁰⁾ 요는 전쟁을 통해 차지한 압록강 동쪽 지역을 자신들의 영토로 여겼다. 이러한 양자 간의 인식 차이로 인해 요는 지속적으로 고려에 각장과 같은 시설물을 설치하려 했고, 문종 29년(1075)에는 지계 조정을 요구했으며, 고려는 그것을 저지하려 했다. 그렇다면 요가 각장을 설치하려 한 이유는 무엇일까.³¹⁾

B-4를 살펴보면, 요는 매매원, 각장을 통해 교역을 요구하고 있다. 요는 각장을 통해 고려와 보다 활발한 교역을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요는 압록강 동쪽 지역에 거점을 마련하여 영토의 경계를 공식화하고

28) 癸酉 遼東京兵馬都部署, 奉樞密院劄子移牒, 請治鴨江以東疆域(『고려사』 권 9, 문종 29년 7월).

29) 이미지, 앞의 논문, 2003, 93쪽.

30) 고려의 영토 관념은 현실적으로 획득을 목표로 했거나, 획득이 가능했던 압강의 완충 지대를 영토의 경계로 생각하는 인식도 어느 정도 존재했던 것이다. 고려가 생각하고 있는 영토관념은 압록강을 염두에 두면서도 그것을 넘어 요동의 지리적 공간을 포괄하는 것이었다. 보주와 관련된 영토 문제는 현실적으로 서희-소손녕 회담에서 고려의 영토로 획정된 압록강 동쪽의 영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도 동시에 기자나 고구려와 관련되는 요동을 고려의 영토로 생각하는 인식도 보주 반환을 주장하는 배경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박재우, 「고려전기 영토관념과 邊境」, 『한국중세사연구』 35, 2013, 188~189쪽).

31) 기존 연구에서는 요가 각장을 설치하고자 한 까닭을 고려·송 관계의 견제에서 찾고 있다. 요가 고려를 정치 외교적으로 압박하거나 견제하는 수단으로 각장을 설치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미지는 각장 문제의 근본적인 핵심은 송과 국교를 재개한 고려에게 요가 외교적 압력 행사하는 것이지만, 교역의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면도 있다고 했다(이미지, 앞의 논문, 1996). 각장 설치의 이유를 요의 경제적 필요성에서 찾고, 그 근거로 요의 국내 사정을 살펴본 연구도 있다(류채영, 『고려 선종대의 대외정책 연구』, 『한국문화연구』 9, 2005, 267쪽).

정치·군사적으로 고려를 압박하는 동시에, 무역을 통해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려고 했던 것 같다. 이와 관련하여 『遼史』 식화지에 호시(互市)와 관련된 기록이 있어 주목된다.

- C. 동평군(東平郡) 성 안에 간루(看樓)를 설치하고 남시(南市)·북시(北市)로 나누어서, 오전[禺中]에는 북시에서 교역하고 오후[午漏下]에는 남시에서 교역하게 하였다. 웅주(雄州)·고창(高昌)·발해(渤海)에도 역시 호시(互市)를 세워서 남송(南宋)·서북 각 부(部)·고려(高麗)의 물화가 통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여진[女直]은 금(金)·비단[帛]·삼베[布]·꿀[蜜蠟]·각종 약재를, 철리(鐵離)·말갈(靺鞨)·우궤(于厥) 등 부(部)는 합주(蛤珠)·청서(靑鼠)·초서(貂鼠)·교어(膠魚) 가죽과 소와 양, 낙타와 말, 모직 양탄자[毳罽] 등의 물건을 가지고 와서 요(遼)에서 교역하려는 자가 도로에 실처럼 연이어졌다.〈성종(聖宗) 통화(統和)〉 23년(1005)에 진무군(振武軍) 및 보주(保州)에 아울러 각장(榷場)을 설치하였다. 그때 북원대왕(北院大王) 야율실로(耶律室魯)가 녹봉으로 주는 양[俸羊]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部)의 사람들이 빈곤하다고 하고, 늙고 야윈 양과 가죽, 털을 남중(南中)의 비단[絹]과 교역함으로써 위아래 모든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하자고 요청하였다. 천조제(天祚帝 : 1101~1125)의 난리에 이르자 세금(賦斂)은 이미 무거워졌으며 교역법은 무너져서, 재정은 날로 무너지고 백성은 날로 곤궁해졌다(『요사』 권60, 식화지 下).³²⁾

위의 사료는 요가 보주에 각장을 설치한 배경을 나타내고 있다. 각장은 국경 지대에 설치된 국제 무역장으로서, 요는 일찍부터 송·서하와의 사이에 각장을 설치해 교역을 하고 있었다. 요는 고려와의 국경 지대인 보주에도 각장을 설치하여 교역의 이득을 취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각장에서 거래된 물품이 명확하게 사료에서 발견되지는 않으나,

32) 東平郡城中置看樓，分南·北市，禺中交易市北，午漏下交易市南。雄州·高昌·渤海亦立互市，以通南宋·西北諸部·高麗之貨，故女直以金·帛·布·蜜蠟·諸藥材，及鐵離·靺鞨·于厥等部以蛤珠·靑鼠·貂鼠·膠魚之皮，牛羊·駝馬·毳罽等物來，易於遼者，道路繼屬。… 〈聖宗統和〉二十三年，振武軍及保州並置榷場。時北院大王耶律室魯以俸羊多闕，部人貧乏，請以羸老之羊及皮毛易南中之絹，上下爲便。至天祚之亂，賦斂既重，交易法壞，財日匱而民日困矣。

요와의 무역품은 거의 대부분 일반 백성의 수요와는 거리가 있는 사치품과 고가품이었다고 한다.³³⁾ 대표적인 수출품은 금·은·동의 광산물, 포백류(布白類), 인삼, 차 등이 있었다. 요로부터의 수입품은 견직물, 서역산 중계품, 말·양 등의 가축 등이 있었다.³⁴⁾ 요는 국경 지대인 보주 지역에 각장을 설치함으로써 고려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려는 요의 각장 설치를 반대했는데, 그 이유는 고려가 요의 군사적 위협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고려는 요의 침입을 겪었기 때문에, 요와의 각장 개설을 군사적 위협으로 연결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는 같은 북방민족이면서도 직접 고려를 침입한 적이 없는 금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장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사실에서 알 수 있다.³⁵⁾ 고려로서는 요와의 교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생길 수 있는 각장 무역을 선호하지 않았던 듯하다.

요의 각장 설치 시도에 관해 정리하자면, 1005년 고려와 요 간에 개설되었던 각장은 요의 2차 침입으로, 1014년에 개설된 각장은 요의 3차 침입으로 그 기능을 상실했다. 요는 매매원을 설치하는 등 교역로를 다시 열려했으며, 이에 고려 선종 때에는 각장을 설치하려 했다. 고려 문종 29년(1075) 요가 고려에 제기한 지계 조정이 아직 해결되지 못했으므로, 요는 각장을 설치하여 고려의 대외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동시에 자국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다.

특히 보주는 교통의 요지로 압록강 상류와 하류, 동과 서를 연결하는 중요한 길목이라는 이점을 지닌 지역이었다. 압록강 하류를 통해 서해로 나아가는 길은 고구려 시대부터 중요한 항로였다.³⁶⁾ 더군다나 보주

33) 이정희, 앞의 논문, 1997, 50쪽.

34) _____, 위의 논문, 51쪽.

35) 박한남, 앞의 논문, 1993, 184~185쪽.

36) 윤명철, 「고구려의 南進 전략과 해양활동 연구」, 『STRATEGY』 21, 1999; 「國內城의 압록강 방어체계 연구」, 『고구려연구』 15, 2003 참조.

는 국경 관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호시를 통해 중개무역의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곳이었다. 즉 보주에 각장을 설치하려는 요의 의도는 송과 관계를 재개한 고려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자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고려는 압록강 동쪽에서 요가 세력을 확대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 이유는 사료 B군의 표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지역이 옛 고구려의 땅이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보주는 외부의 침략이 있을 때 공략의 첫 대상이자 함락되는 순간 침략군의 통로로 쓰일 수 있었다. 고려는 요와의 분쟁의 싹이 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처럼 보주 지역에 각장을 설치하는 문제를 두고 고려와 요의 이해관계는 달랐으며, 이에는 보주 지역의 정치적·군사적 거점뿐만 아니라 교역 장소로 가지는 경제적 거점으로서의 기능이라는 요인이 작용했다. 요와 고려와의 이해관계가 상충해 있던 보주 지역은 요가 멸망하면서 고려의 영토로 편입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장을 달리하여 살펴보겠다.

3. 금의 보주 양여(讓與)와 고려의 보주 통치

고려가 새로 개척했던 9성에서 철수하고 여진과 강화를 맺은 지 6년 만인 1115년 여진족은 완안부 주도하에 금을 건국했다. 이 시기 고려가 가장 주력한 것은 보주를 확보하는 문제였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의 기록을 살펴보겠다.

- D-1. 금나라의 장군 撒曷이 요나라의 來遠城과 抱州城을 공격해 거진 함락시키자 요나라 統軍 耶律寧이 부대를 이끌고 도망하려 했다. 왕이 樞密院知奏事 韓敷如를 보내어 귀부할 것을 설득했으나, 야율영은 왕의 공식 문서가

없다며 거절했다. 한교여가 급히 사정을 보고하자, 왕은 樞密院으로 하여금 공문을 갖추어 보내게 하려 했다. (중략) 왕이 사신을 금나라에 보내, 抱州는 본래 우리의 옛 땅이니 돌려받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자 금나라 임금은 사신더러 본국이 스스로 취하라고 말했다(『고려사』 권14, 예종 11년 8월).³⁷⁾

D-2. 마침내 금나라 군대가 요나라 開州를 공격해 점령한 다음 來遠城 및 大夫·乞打·柳白의 세 군영을 습격해 전함을 모두 불태우고 배를 지키는 사람들을 사로잡았다. 그제야 統軍인 尙書左僕射·開國伯 耶律寧이 來遠城刺史인 檢校尙書右僕射 常孝孫 등과 함께 관리와 백성들을 배 140척에 싣고 강변에 출항 준비를 해 둔 다음 寧德城에 다음과 같은 공문을 보냈다. “統軍部 내의 곡식을 채 수확하지 못해 쌀값이 급등하여 백성들이 곤궁한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려국의 인근에 위치한 관계로 진작 식량을 차용하는 일을 추진했으나 시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관내 백성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 후방 지역으로 달아나 버렸으니 이는 나중 우리가 돌아와서 서로 좋게 해결할 일입니다. 이제 고을 백성들과 관할 지역을 인계하고 가니 이를 인수한 뒤에는 우리 황제의 조치에 따라 시행하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내원성과 포주성을 우리에게 반환한 후 배를 타고 도망가 버리자 우리 군대가 두 성에 들어가 많은 양의 무기 및 화폐와 보물을 압수했다. 金緣이 급히 보고서를 올리자 왕이 크게 기뻐하여 抱州를 義州防禦使로 고치고 압강을 국경으로 삼아 關防을 설치했다(『고려사』 권14, 예종 12년 3월).³⁸⁾

37) 金將撒喝攻遼來遠·抱州二城幾陷，其統軍耶律寧欲帥眾而逃。王遣樞密院知奏事韓噉如招諭，寧以無王旨辭。噉如馳奏，王欲令樞密院具劄子送之。(중략) 王乃遣使如金，請曰，“抱州本吾舊地，願以見還。”金主謂使者曰，“爾其自取之。”

38) 王命兩府·臺省侍臣，知制誥，文武三品，都兵馬判官以上，會議中書省，令判兵馬事金緣等，傳諭統軍，“若歸我兩城人物則，則不須掇借米貨。”再三往復，統軍不肯從。及金兵攻取遼開州，遂襲來遠城及大夫·乞打·柳白三營，盡燒戰艦，擄守船人。統軍尙書左僕射開國伯耶律寧，與來遠城刺史檢校尙書右僕射常孝孫等，率其官民，載船一百四十艘，出泊江頭。移牒寧德城曰，“統軍部內，田禾未收，米穀踊貴，致有貧寒人等。爲高麗國隣近住坐，已曾借糧推進，不行掇借。爲此，部內人民赴裏面州城，趨逐米粟去。此至回來爲相和事。在此州并地分交付去訖，仰行交受，已後准宣命施行。”以來遠·抱州二城，歸于我，遂泛海而遁，我兵入其城，收兵仗及錢貨寶物甚多。金緣具狀馳奏，王大悅，改抱州爲義州防禦使，以鴨江爲界，置關防。

D-1을 통해 고려가 금에 사신을 파견하여 포주 즉 보주를 돌려달라는 외교문서를 보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금은 스스로 취하라고 답변했다. 당시 금은 요동반도의 개주와 고주를 공략하여 보주로 방면의 전 여진을 통합하고 있었다.³⁹⁾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금이 보주를 점령할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 금이 보주를 점령하려 한다면 고려와 충돌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었다. 이 때 고려는 외교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금에 앞서서 보주 영유권을 주장했다. 이 지역에 대하여 금이 간섭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 했던 것이다.

고려가 실제적으로 보주를 차지하는 과정은 D-2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예종 12년(1117) 금나라 병사에 쫓기던 요는 보주의 소유권을 고려에 넘기고 도망감으로써 보주는 고려의 행정구역에 편입되어 의주방어사가 되었다. 이로써 고려의 북서 경계는 압록강까지 회복되었고, 2년 후 예종은 의주성을 비롯한 북방의 장성을 중축하며 고려의 대북방 경계선을 명확히 했다. 고려는 1116~1117년 사이 군사적 충돌 없이 보주를 점령했다.

그런데 이로부터 10년 후인 인종 4년(1126) 9월 양국 간에 정치적인 사대관계가 수립된 직후 금 태종은 보주 소유 문제를 제기했으며, 고려는 보주가 고려 소유인 것을 확인시켰던 사실을 주지시켰다. 다음 기록을 통해 보주 영유권에 관한 고려와 금의 입장 차이를 알 수 있다.

E-1. 금의 임금이 고백숙 등에게 단단히 타일러 이르기를, “고려(高麗)에서 파견한 사신의 왕래에 대하여서 마땅히 모두 옛날 요(遼)에게 하였던 구례(舊例)를 따를 것이며, 보주로(保州路)와 변방의 백성으로서 현재 고려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모두 돌려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의 요구를 일일이) 들어주거든 보주(保州)의 땅을 하사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고려사』 권15, 인종 4년 9월).⁴⁰⁾

39) 이용범, 「10~12세기의 국제질서」, 『한국사』 4, 국사편찬위원회, 1974, 243쪽.

40) 金主勅伯淑等曰 “高麗凡遣使往來，當盡循遼舊 仍取保州路及邊地人口在彼界者，須盡數發還。若一聽從，即以保州地賜之。”

E-2. “고백숙(高伯淑)이 와서 은밀히 황제의 뜻을 전하였는데, ‘보주성(保州城) 지역을 고려(高麗)에 귀속시키고 다시는 수복(收復)하지 않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고구려(高麗)의 본토는 저 요산(遼山)을 중심으로 하였고, 평양(平壤)의 옛 터는 압록강(鴨綠江)을 경계로 하였는데, 여러 차례 바뀌어 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선조(祖宗) 때에 북쪽으로 요(遼)가 겸병(兼并)하고 삼한(三韓)의 영토까지 침범하여 와서, 비록 수호를 강구하기는 하였지만 옛 땅은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천명이 새롭게 내려 이미 성왕(聖王)이 즉위하고, 군사가 정의를 위하여 일어남을 보고(적들이 도망가)성보(城堡)는 무인지경이 되었습니다. 나의 아버지 선왕 때에 대요(大遼)의 변방 관리 사을하(沙乙河)가 와서 황제의 칙지를 전달하며 이르기를, ‘보주는 본래 고려의 땅이니 고려가 수복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선왕은 <보주>의 성과 못을 수리하고 백성들을 이주시켰습니다. (중략) 이 동쪽 바닷가의 작은 땅은 본래 우리나라의 변경 지역이었다가 비록 예전에 거란(契丹)에게 빼앗기기는 하였지만, 이미 선대로부터 은혜를 입었던 데에 이제 다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우리나라에 예속시키니 이 일이 어찌 요행으로 이루어진 일이겠습니까?(『고려사』 권15, 인종 4년 12월).⁴¹⁾

E-1을 살펴보면, 금은 고려에 양국 통교의 기준을 명시하고, 고려 영토에 들어와 있는 여진인의 쇄환을 요구했다. 고려에서 이를 받아들인다면 보주 지역을 준다는 것이었다. 이후 금은 금의 양도로 보주를 다시 차지하게 된 것에 대한 심도 깊은 충성을 맹세한 서서(誓書)를 보낼 것, 고려 영토에 들어와 살고 있는 호구의 쇄환, 압록강 유역 경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고려는 보주성만 확보한 것이니 금의 농부가 일정하여 농사짓는 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말 것 등을 제시했다.

E-2에서는 고려의 견해를 살펴볼 수 있다. ‘勾麗의 본토가 遼山을

41) 表曰, “高伯淑至, 密傳聖旨, ‘保州城地許屬高麗, 更不收復.’ 切以勾麗本地, 主彼遼山, 平壤舊墟, 限於鴨綠, 累經遷變. 逮我祖宗, 值北國之兼并, 侵三韓之分野, 雖講隣好, 未歸故疆, 及乎天命惟新, 聖王既作, 見兵師之起義, 致城堡之無人. 當臣父先王時, 有大遼邊臣沙乙何來, 傳皇帝勅旨曰, ‘保州本高麗地, 高麗收之可也.’ 先王於是理其城池, 實以民戶. (중략) 惟此東濱之寸土, 本爲下國之邊陲, 雖嘗見奪於契丹, 謂已拜恩於先代, 特推異渥, 仍屬弊封, 豈僥倖而致茲?”

중심으로 하였다'는 것은 압록강을 넘어서는 옛 고구려 영토에 대한 언급으로서 요동, 해동을 고려의 영토로 생각하는 관념이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인종 7년(1129) 고려는 금에 서표를 올려 금으로부터 보주의 점유를 공식적으로 승인받았다. 금에서 가장 중요시한 것은 서표였으며, 보주는 서표를 요구하는 논거이자 수단이었다. 고려에 대해서 보주를 할사했다는 입장을 견지한 금으로서 서표를 요구할 명분이 충분하다 여긴 것이고, 고려는 고토 회복의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보주에 대한 영유권을 승인받고자 그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⁴²⁾

『금사』 고려전에는 인구 쇠퇴 문제가 해결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로부터 보주의 경계가 비로소 정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다.⁴³⁾ 인종 8년(1130)에 이르러 서표와 인구쇠퇴 문제가 해결되면서 고려는 보주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고려는 보주를 확보한 뒤 이 지역을 어떻게 통치했을까?

『고려사』에는 인종 때 지방관의 녹봉을 정한 기록이 상세히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유수, 대도호부사, 부사, 판관, 현위 등 각 지방에 파견된 관리들의 녹봉을 알 수 있다. 당시 의주부사의 녹봉이 60석, 의주판관의 녹봉이 40석이었다고 한다.⁴⁴⁾ 이 시기 의주부사가 파견된 기록은 찾을 수 없지만, 의주판관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있다. 1165년(의종 19) 서북면병마사 윤인첨(尹麟詹) 등이 의주판관 조동희(趙冬曦)와 함께 압록강 안 섬을 둘러싼 분쟁을 처리했다.⁴⁵⁾ 판관 이외에도 의주에

42) 박윤미, 앞의 논문 2017, 195~196쪽.

43) <天會八年> 是歲，高麗十人捕魚，大風飄其船抵海岸，曷蘇館人獲之，詔還其國。既而歸上表請不索保州亡入高麗戶口，太宗從之，自是保州封域始定(『金史』卷13 5, 列傳73 外國下 高麗 天會 8年).

44) 四十石。【東·西·南京掌書記，安邊·安南都護判官，安北·安西都護，八牧司錄兼掌書記，諺州州副使，雲·龍·麟·延·孟·昌·義·靜·朔·長·定等州判官，定戎·清塞·平濤·威遠·寧仁·寧朔·宣德·寧德·元興·寧遠等鎮判官，靜邊·永興·鎮冥·龍津·長平·朝陽·白嶺等鎮將，撫·渭·博·嘉·肅·慈·郭·殷·成·順·德·高·文·豫·龜·泰·宜·交等州副使，安義鎮使】(『고려사』 지 권34, 식화3, 녹봉).

도령(都領),⁴⁶⁾ 분도장군(分道將軍) 등이 파견되었다.⁴⁷⁾

『고려사』에 의주 도령에 관련된 기록으로는 최경약(崔敬若)을 살펴 볼 수 있다. 『고려사』 열전 조위총(趙位寵)에는 “올해 6월 조위총과 북계(北界)의 40여 성이 금에 복속하고자 의주도령(義州都領) 최경약(崔敬若)을 파견하여 파속로총관부(婆速路惣管府)에 공문을 가져가게 하였 습니다. <그러나 최경약이> 의주의 관문에 이르러 정백신(鄭白臣) 등에게 살해되었으며...”⁴⁸⁾라고 기록되어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양계에 파견된 도령이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보인 것은 조위총의 난에서라고 한다.⁴⁹⁾ 조위총군의 주력은 각 성의 도령이 지휘하는 주진군이였다. 『고려사』 조위총전에 나와 있듯이 조위총의 난에는 안북도호부 등 34성 도령의 이름 아래 정주(靜州)를 회유하는 글이 보내졌고 이에 정주를 제외한 북계 40여성이 호응했기 때문이다.

의주 도령 최경약 또한 조위총 측에 가담한 인물이다. 금에 복속하고자 최경약을 보냈다는 것을 보면, 그는 외교 사절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45) 『고려사절요』 권11, 의종 19년 3월.

46) 도령에 관해서는 도령이 고려에 귀화한 여진인의 村 또는 州의 수령에게 부여한 칭호라는 견해(江原正昭, 「高麗の州縣軍に關する-高麗軍への編入を中心にして-」, 『조선학보』 28, 1963, 59~71쪽), 양계 지역의 주진군을 지휘하는 최고 지휘관이라는 설(金南奎, 『高麗兩界地方史 研究』, 새문사, 1989, 110~116쪽), 양계 지역의 도령은 주로 그 지역의 토착세력이 임명되었다는 연구가 나왔다(趙仁成, 「高麗 兩界 州鎮의 防戍軍과 州鎮軍」, 『高麗光宗研究』, 一潮閣, 1981, 132~133쪽). 더 나아가 시기별로 다른 도령제의 변천을 통해 도령의 지위와 활동상에 대해 살펴본 연구도 있다(김갑동, 「고려시대의 都領」, 『한국중세사연구』 3, 1996). 김갑동에 따르면 도령은 정규군의 편제에 있었던 지휘관 명칭은 아니지만, 고려의 병제가 무너져 가던 고려 중기 이후의 상황 속에서는 막강한 세력을 가진 존재였다고 한다. 대체로 이들은 국방상 중요한 지역인 양계 지역의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었고 중앙에서는 새로이 창설된 특수부대의 지휘관이었기 때문이었다.

47) 『고려사』 권100, 열전 13, 제신, 두경승; 『고려사』 권100, 열전 13, 제신, 조위총; 『고려사』 권101, 열전 14, 제신, 양규.

48) 『고려사』 권 100, 열전 13, 제신, 조위총.

49) 金南奎, 위의 책, 1989, 116쪽.

보인다. 이 시기 의주 도령은 조위총의 난에서 주도적·실무적 지도자였던 듯하다. 한편 분도장군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록이 주목된다.⁵⁰⁾

F-1. 윤3월. 우간의(右諫議) 송저(宋訥)를 좌천하여 거제현령(巨濟縣令)으로 삼았다. 옛 제도에, 의주(義州)는 두 나라의 관문(關門)이 되므로 무릇 사신(使臣)의 왕래와 문첩(文牒)의 출입은 모두 이곳을 경유하였으므로 반드시 문신 가운데서 가려뽑아 이곳을 지키게 하였으며, 그 분도원(分道員)도 또한 상참관(常參官) 가운데 명망(名望)이 있는 자로 보냈다. 경인년(1170) 이후부터 무신들이 권력을 행사하면서 변방을 지키는 장군은 모두 병마(兵馬)의 직임을 띠게 하고 분도(分道)로 삼았고, 창주(昌州)와 삭주(朔州) 두 성도 모두 장군에게 맡겼으며, 의주는 곧 문첩(文牒)을 서로주고 받는다 하여 문관과 무관 2인을 겸치하였으므로 고을 사람들이 경비로 인해 괴로워하였다. 송저가 병마사가 되니 호소하기를, “우리 고을은 본디 북쪽의 비루하고 부족한 시골인데 문무 분도가 항상 한 성에 거주하니 그 경비를 덜 돈이 부족하며, 몇 년 지나지 않아 고을은 폐허가 될 것이니 청하건대 상주(馳奏)하여 편리한대로 몇 개의 성으로 나누어 관장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송저가 옳다고 여기고 문관으로 의주분도(義州分道)를 삼고 영주(靈州)와 위원진(威遠鎭)을 예속하게 하고, 무관(武官)으로 정주분도(靜州分道)를 삼아 인구(麟州)와 용주(龍州)를 예속하게 하자고 갖추어 아뢰었더니, 그 말을 따르라고 제서를 내렸다. 여러 장군들이 그것을 듣고 노하여 서로 일러 말하기를, “이것은 무신의 권력을 뺏고자 함이니 송저를 베어 죽임으로써 사죄받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깜짝 놀라 친히 타이르고(기분을) 풀어주고 마침내 송저를 좌천시켰다(『고려사절요』 권12, 명종 11년 윤3월)⁵¹⁾.

50) 양계에는 군사적으로 분도가 있어 방수장군이 파견되었다. 변태섭은 방수장군을 분도장군으로 보고 있다(邊太燮, 『高麗政治制度史 研究』, 一潮閣, 1981, 221쪽).

51) 閏月. 貶右諫議宋訥爲巨濟縣令. 舊制, 以義州爲兩國關門, 凡使介來往文牒出入皆由之, 故必擇文臣以調之, 其分道員, 亦以常參官有名望者遣之. 自庚寅之後, 武臣用事, 以戍邊將軍皆帶兵馬之任, 以爲分道, 故昌朔二城, 皆以將軍委之, 義州則以文牒交受, 兼置文武二人, 故州人困於供費. 及訥爲兵馬使, 訴曰, “吾邑本北鄙殘鄉, 而文武分道恒住一城, 供費不足, 不數年, 邑其丘墟矣, 請馳奏, 以便宜分管數城.” 訥然之, 具奏, 以文官爲義州分道, 隸以靈州威遠鎭, 武官爲靜州分道, 隸以麟州龍州, 制從之. 諸將軍聞之, 怒相謂曰, “此欲因以奪武臣權耳, 請斬訥以謝.” 王驚駭, 親諭解之, 遂貶訥.

F-2. <김희제(金希礪)는>외방으로 나가 의주분도장군(義州分道將軍)이 되었는데, <고종(高宗)> 10년(1223) 금의 원수(元帥) 우가하(兀可下)가 마산(馬山)에 군사를 주둔시키고 몰래 의주(義州)·정주(靜州)·인주(麟州) 3주를 노략질하였다. 김희제가 가서 칠 것을 주청하였으나 명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이에 감사(甲士) 100인을 보내 우가하의 진영을 급습하여 3인을 생포하고 달아나다 암록강에 빠져 죽은 자가 자못 많았다. <그리고>군수품 수송선 22척을 취하여 돌아왔다. 얼마 뒤 서북면병마부사(西北面兵馬副使)로 고쳤는데, <고종 13년(1226) 우가하가 군사에게 몽고복을 바꿔 입도록 하고는<다시>의주·정주로 쳐들어 왔다 … (중략) … 처음에 김희제가 출병하면서 은밀히 글로 최이(崔怡)에게 보고하였으므로, 돌아올 때, 유사(有司)에서 김희제가 마음대로 군사를 일으킨 일을 탄핵하려 하였는데, 최이가 알고 있었다는 말을 듣고는 결국 중지하였다. 그러므로 논공행상을 행하지는 않았다(『고려사』 권 103, 열전 16, 제신, 김희제).⁵²⁾

F-1에 따르면, 의주는 양국의 관문으로 사신의 내왕과 문첩의 출입을 하는 곳이므로 반드시 문신이 지키게 했으며, 그 분도원도 명망있는 자로 파견했다. 그런데 무신난 이후부터는 분도장군이 모두 병마의 직임을 맡았다. 특히 의주에는 문무 2인의 분도를 배치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 문관으로 의주분도를 삼고 무관으로 정주분도를 삼아 각각 관리하게 하자고 했다. 사료를 통해 의주가 고려와 중국왕조 양국 사이의 관문이 되는 중요한 지역이므로 문관과 무관 2인을 파견하게 했음을 알 수 있다.

분도제는 무신난 후에 더욱 활발히 이용되고 분도장군의 지위도 높아졌다. 『고려사』 백관지 병마사 조를 살펴보면, 무신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서북계 방수장군(防戍將軍)이 처음으로 병마관관을 겸하게 되었는데, 신종 때에 부사로 올랐다.⁵³⁾ 무신난 전에도 분도는 군사적인 제도

52) 出爲義州分道將軍，十年，金元帥兀可下，屯兵馬山，潛寇義·靜·麟三州。希礪奏請往擊，不得命，乃遣甲士百人，掩襲兀可下營，擒三人，奔潰溺鴨綠江死者頗多。取輜重二十二船以還。俄改西北面兵馬副使，十三年，兀可下欲使其兵，變蒙古服，入寇義·靜州 … 初希礪將發兵，密以書告崔怡，及還，有司欲劾希礪擅興師，聞怡知之，遂寢。然功賞不行。明年，出爲全羅道巡問使。

53) 兵馬使。成宗八年 置於東·西北面兵馬使一人三品，玉帶紫襟，親授斧鉞赴鎮，專制

였지만, 대개 문관이 병마직을 가지고 파견되었으나, 무신난 후에는 무관인 방수장군이 분도가 되고 병마판관을 겸했다. 고려는 양계의 장관인 병마사로 하여금 양계를 방비하게 하는 동시에 변방 지역에는 분도를 설치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게 하는 이중 체제를 이루었던 것이다.⁵⁴⁾ 이로 보아 의주에 파견된 분도장군 또한 그 지위가 상당했던 듯하다.

F-2에서 의주 분도장군 김희제(金希礪)는 금의 우가하가 의주·정주·인주를 침입했을 때, 명령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사 100명을 보내 우가하의 진영을 공격했다. 물론 김희제는 출병할 때 최이에게 은밀히 보고했다고 한다. 하지만 공식적인 명령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를 일으켰다는 점, 분도장군에서 서북면병마부사로 직위를 고쳤다는 점을 통해 그의 지위를 짐작할 수 있다.

G. 한순(韓詢)과 다지(多智)는 모두 의주(義州)의 수졸(戍卒)로서, 한순은 별장(別將)이 되고 다지는 낭장(郎將)이 되었다. 고종(高宗) 6년(1219), 두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 방수장군(防戍將軍) 조선(趙宣)과 <의주의> 수령(守令) 이체(李榭)를 죽이고는 스스로 원수(元帥)라고 일컬었으며, 관청에다 감장사(監倉使)와 대관(臺官)을 설치하였다. 제멋대로 국가의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누어주니, 여러 성(城)들이 호응하였다. <조정(朝廷)에서는> 장군(將軍) 조염경(趙廉卿)과 낭중(郎中) 이공로(李公老)를 파견하여 이들을 불러 달래려고 하니, 한순과 다지의 무리 50여 명이 가주(嘉州) 객사(客舍)로 와서 말하기를, “병마사(兵馬使) 초충(趙冲)·김군수(金君綏)·정공수(丁公壽) 등은 청렴결백하고 민(民)들을 사랑하였습니다만, 나머지는 모두 탐오하고 잔학하여 민들에게서 가혹하게 거두어들이기를 거죽을 깎고 골수(骨髓)를 빼듯이(剝膚髓) 하니,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이 지경에 이르렀을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최이(崔怡)가

閫外。知兵馬事一人亦三品，兵馬副使二人四品，兵馬判官三人五六品，兵馬錄事四人，又以門下侍中·中書令·尙書令，爲判事，留京城，遙領之。後以西北路邊圉事煩，錄事增爲七人。靖宗五年，兵馬使奏“北朝通好，關塞無虞，每春秋遞代，亭驛勞弊，請減錄事一員。”從之。毅宗庚寅以後，武臣用事，西北界防戍將軍，始兼兵馬判官，神宗陞爲副使(『고려사』 지, 권31, 백관 2, 외직).

54) 邊太變, 앞의 책, 1981, 223쪽.

그 말을 듣고, 안영린(安永麟)·유비(柳庇)·준필(俊弼)·이정수(李貞壽)·최수웅(崔守雄)·이세분(李世芬)·고세림(高世霖)·홍문서(洪文敘)·이윤공(李允恭)·최효전(崔孝全)·송자공(宋自恭)·이원미(李元美)·최밀(崔謐) 등이 일찍이 최충헌(崔忠獻)에 아부하여 혹은 안찰사(按察使)가 되고, 혹은 분도(分道)·분대(分臺)·감창사가 되며, 또는 큰 고을의 수령이 되어 끊임없이 민들을 수탈하였다는 이유로 여러 섬으로 유배를 보냈다 … (중략) … <고종> 9년(1222), 한순과 다지의 일당이 다시 동진의 군사 10,000여 명을 이끌고 정주(靜州)로 들어갔다가 마침내 의주로 쳐들어오니, 방수장군(防守將軍) 수연(守延)이 싸우다가 참패하였다(『고려사』 권130, 열전 43, 叛逆, 한순·다지). 55)

G는 의주 별장 한순(韓詢)과 의주 낭장 다지(多智)의 난에 관한 기사이다. 이 난에는 여러 성이 호응했고, 한순가 다지의 무리가 50여 명이나 되었다. 사료를 살펴보면, 지방 관리의 수탈로 인해 난이 일어났다. 아울러 최충헌에 아부하여 안찰사 혹은 분도·분대·감창사 등이 되어 백성을 수탈했다고 한 것을 보면 당시 지방 관리들의 횡포를 짐작케 한다. 한순과 다지 등이 살해된 뒤 의주의 백성들을 안집하기 위해 파견된 관리 종주재가 사람들을 수탈하여 다시 반란이 일어나기까지 했다.⁵⁶⁾

한순과 다지의 난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관리의 수탈이었지만, 그 성격을 순수한 민란이라 보기는 어렵다.⁵⁷⁾ 이 난의 주도자인 한순과 다지는 지방군의 장교이기 때문이다. 한순 등은 스스로 여러 성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박주(博州)에 주둔하기까지 했다.⁵⁸⁾ 지방군이 조직

55) 韓詢·多智, 皆義州戍卒, 詢爲別將, 智爲郎將. 高宗六年, 二人反, 殺其防戍將軍趙宣及其守李棧, 自稱元帥, 署置監倉使及臺官. 擅發國倉, 諸城響應. 遣將軍趙廉卿·郎中李公老, 招撫之, 詢·智黨五十餘人至嘉州客舍曰, “兵馬使趙冲·金君紱·丁公壽等, 清白愛民, 餘皆貪殘, 厚斂於民, 剝膚椎髓, 不堪其苦, 乃至於此耳.” 崔怡聞其言, 以安永麟·柳庇·俊弼·李貞壽·崔守雄·李世芬·高世霖·洪文敘·李允恭·崔孝全·宋自恭·李元美·崔謐等, 嘗詔事忠獻, 或爲按察, 或爲分道分臺監倉使, 或求巨邑, 侵漁無厭, 分配諸島 … 九年, 詢·智黨, 復引東眞兵萬餘, 入靜州, 遂侵義州, 防守將軍守延, 與戰敗績.

56) 『고려사절요』 권15, 고종 7년 4월.

57) 金南奎, 앞의 책, 1989, 135쪽.

적으로 참가한 것이다. 이는 북계 지방의 토호인 지방군 장교 한순과 다지가 주진군을 통솔하여 싸운 것으로 중앙 정부의 지배를 배제하기 위한 반란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H. 義州와 靜州는 인재가 쇠잔하였고 또 물이 안으로 흘러 들어와 농사를 지을 수 없으므로 각각 관리를 두는 것은 마땅하지 않으므로 靜州副使가 義州를 겸하여 다스리게 하였다(『고려사』 권23, 고종 22년 3월).⁵⁹⁾

H에 따르면, 고종 22년(1236) 의주와 정주는 인재가 쇠잔하고, 농사를 지을 수 없으므로 각각 관리를 두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의주 지역은 고종 3년 거란의 침입, 고종 4년 여진의 침입, 고종 6년 황기자군의 침입, 고종 10년 금의 노략질 등 지속적으로 외부의 침략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한 지방군 장교가 난을 일으키기까지 했다.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병마사, 낭장 등이 파견되기는 했지만, 오히려 이들이 백성들을 수탈하는 한편 일부는 중앙정부에 반기를 들기도 했던 것이다. 이후 대몽전쟁기 후반기에 이르면 북계 지역 주진군은 복구가 힘들 정도로 파괴되고,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다.⁶⁰⁾ 읍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특히 의주는 몽골의 침입 과정에서 언제나 몽골군의 첫 번째 진입 지역이었다. 결국 의주 일대는 몽골군의 집결지로 전락되었다.

58) 韓恂多智等以清川江爲界，投東眞，潛引金元帥丐哥下，令屯義州。自領諸城兵，屯博州(『고려사절요』 권15, 고종 7년 2월).

59) 壬子 詔，義·靜二州 人物凋殘，且移入水內，不得耕種，不宜各置官吏，其以靜州副使，兼理義州.

60) 송용덕, 「高麗後期 邊境地域 변동과 鴨綠江 沿邊認識의 형성」, 『역사학보』 201, 2009, 6쪽.

4. 맺음말

고려는 요동, 해동의 지리적 공간을 고려의 영토로 인식하는 영토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듯이 고려가 요동(遼東), 해동(海東) 관념을 토대로 고구려 고토(故土) 수복을 지속적이고 의지적으로 적극 추진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고려는 요나 금의 정치군사력을 인식하면서 이러한 영토 관념을 표방할 기회가 생길 때마다 현실적으로 활용했다. 보주를 돌려받은 사례가 그러하다.

이와 같이 고려가 보주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던 시기는 요·금 교체시기였다. 고려는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경제적·군사적 요충지인 보주 지역을 획득할 수 있었다. 금은 송과의 대결을 앞두고 고려와 군사적 분쟁을 일으킬 필요가 없었다. 금은 고려에 서표를 요구했으며, 고려는 이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보주 지역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고려의 실리적인 외교였다.

보주는 정치적·군사적·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많은 수의 중낭장, 낭장, 별장 등의 장교를 파견했다. 고려는 금으로부터 보주를 수복한 이후에도 분도장군, 도령, 중낭장, 낭장 등을 이 지역에 파견했다. 사료에서 살펴보았듯이 보주는 양국 사이의 관문이 되는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양계의 장관인 병마사로 하여금 양계를 방비하게 하는 동시에 변방 지역에는 분도를 설치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게 하는 이중 체제를 이루었다. 이들은 독자적인 세력을 충분히 형성할 수 있었다. 무신집권기에 일어났던 조위총의 난의 주도 세력이 도령이었던 점을 보면 그러하다.

특히 의주의 장교였던 한순과 다지는 중앙 정부 지배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이 시기 지방 관리들은 무신 정권에 아첨하며 백성들을 수탈하거나, 중앙 정부에 반대하여 난을 일으켰다. 보주를 확보한 이후 이 지

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병력을 배치시켰지만, 오히려 이들이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했던 것이다. 고종 22년(1236)에 이르면, 이곳은 인재가 쇠잔하고, 농사를 지을 수 없으므로 관리를 따로 파견하지 않고 정주 부사가 다스리게 했다.

요컨대 고려는 국경의 관문에 위치한 보주 지역을 외교적인 방법으로 확보했다. 고려는 북방 영토의식을 가지고, 요나 금의 정치적 상황을 파악하는 가운데 영토 관념을 표방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지역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병마사, 분도장군, 도령, 중낭장 등을 파견하긴 했지만, 오히려 이들은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했다. 조위총의 난, 한순과 다지의 난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고려는 보주에 병력을 배치시켰지만, 무신집권기 이들이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면서 실제로 지배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결국 보주는 대몽전쟁기에 이르러 읍세를 유지할 수 없었다.

(원고투고일 : 2018. 1. 7, 심사수정일 : 2018. 2. 22, 게재확정일 : 2018. 2. 22)

주제어 : 고려, 압록강, 보주, 요, 금, 송

〈참 고 문 헌〉

1. 사료

『高麗史』

『高麗史節要』

『新增東國輿地勝覽』

『遼史』□

『金史』□

2. 단행본

金在滿, 『契丹·高麗關係史研究』, 國學資料院, 1999.

金南奎, 『高麗兩界地方史研究』, 새문사, 1989.

김한규, 『한중관계사』 1, 아르케, 1999.

邊太燮, 『高麗政治制度史 研究』, 一潮閣, 1981.

이정신, 『고려시대의 정치변동과 대외정책』, 경인문화사, 2004.

3. 연구논문

김성규, “여·금의 국교 수립과 ‘誓表’ 문제”, 『한국사연구』 173호(2017).
<http://uci.or.kr/G704-000361.2016..173.005>

김순자, “10~11세기 高麗와 遼의 영토 정책-압록강선 확보를 중심으로-”, 『북방사논총』 11호(2006).

金佑澤, “11세기 對契丹 영역 분쟁과 高麗의 대응책”, 『한국사론』 55호(2009).

류채영, “고려 선종대의 대외정책 연구”, 『한국문화연구』 9호(2005).

박윤미, “고려의 保州 수복과 고려·금 간 외교교섭”, 『한국중세사연구』 51호(2017).

박재우, “고려전기 영토관념과 邊境”. 『한국중세사연구』 35호(2013).
<http://uci.or.kr/G704-001262.2013..35.006>

박한남, “高麗의 對金外交政策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방동인, “高麗時代 北進政策의 推移”, 『領土 問題 研究』 2호(1985).

- 송용덕, “高麗後期 邊境地域 변동과 鴨綠江 沿邊認識의 형성”, 『역사학보』 201(2009). <http://uci.or.kr/G704-000356.2009..201.005>
- 尹武炳, “高麗北界地理考 (下)”, 『역사학보』 5호(1953).
- 윤한택, “고려 보주의 위치에 대하여”, 한국중세사학회 제112회 정기발표회 자료집, (2016.12).
- 이미지, “12세기 고려와 여진·금의 영토분쟁과 대응”, 『역사와 현실』83호 (2012). <http://uci.or.kr/G704-000054.2012..83.013>
- 이미지, “고려 인종대 對金政策의 성격—保州讓與와 投入戶口推刷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 3호(1996).
- 이미지, “高麗 宣宗代 樞場 문제와 對遼 관계”, 『한국사학보』 14호(2003). <http://uci.or.kr/G704-000690.2003.14..008>
- 이미지, “고려 성종대 地界劃定の 성립과 그 외교적 의미”, 『한국중세사연구』 24호(2008). <http://uci.or.kr/G704-001262.2008..24.008>
- 이정희, “고려전기 對遼貿易”, 『지역과 역사』 4호(1997).
- 정수아, “고려중기 대송외교의 재개와 그 의미—북송 개혁정치의 수용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61호(1995).
- 허인옥, “高麗·契丹의 압록강 지역 영토분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Abstract>

Securing Boju of Koryo Dynasty and Its Meaning

Kim, Seon-ah

Boju was located in the lower part of the Amnokgang, and was a key point to be used as a transportation route to the mainland of China and the excavation area as well as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Liaodong area. Boju, which had been dispatched by a large number of provincial armies, occupied an important position in the Koryo period, which was constantly contested with China. Since the Boju area is located at the border gateway, it was not only politically and militarily important, but also a place where it could take advantage of brokerage trade through economic exchange. The intention of establishing a chapter in the Boju area came from the intent of taking economic gain as a means of checking the concerns that resumed the relationship with Song. However, Koryo was intended to prevent the expansion of the Liao forces in the east of the Amnokgang. Boju was the first target of attack when there was an external invasion and could be used as a channel for the invading army at the moment. Koryo was trying to prevent anything that could become a sprout of the conflict with Liao.

The time when Koryo was able to assert its sovereignty over the Boju area was the replacement of Liao and Jin. Koryo was able to acquire the Boju area, which is a strategic economic and military center, through diplomatic methods. Jin demanded Pledge. Koryo accepted this and obtained Boju.

Koryo, even after restoring Boju from Jin, dispatched Bundo army, Doryung, Jungnangjang and Nangjang to the area. It was because it was an important area that became the gateway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particular, Byeongmasa allowed Yanggyae to defend and installed bundo

at the same time. It was a dual system. They were able to form their own forces.

In particular, Han Shun and Da Ji, who were the officers of the provincial government, rebelled against the ruling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this period, local officials flattered the militant regime and deprived the people, or opposed the central government. After securing the Boju, they deployed military forces to effectively rule the region, but rather they formed their own forces.

Key Words : Koryo, the Amnokgang, Boju, Liao, Jin, Song.

